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형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9
----------	------

발의년월일 : 2016년 2월 26일

발 의 자 : 우형찬, 신원철, 김문수,
박기열, 김미경, 전철수,
최조웅, 성백진, 김진수,
강감창, 이상목, 김진영,
진두생, 장우윤, 김인제,
이신혜, 김희걸, 김상훈,
박호근, 유 용, 최판술,
김기대, 유동균, 김동윤,
김태수, 강성언, 문영민,
김용석(도봉) 의원(28명)

1. 제안이유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및 운항에 따른 공항소음 피해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서부권역(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소음 발생 정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의료기관 연계, 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 항공기 소음 관련 각종 자료 구축 및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주민지원사업(안 제4조)
- 라. 주민지원사업의 위탁 및 경비지원(안 제5조~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 (1) 2016년 관련 예산으로 5억원 기반영
 -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4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의 항공기 소음의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에 드는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위탁)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관련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지원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주민지원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주민지원사업) 제1항과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 제1항 제1호)

가. 총비용 ≙ 2,241,164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비 (제4조 제2항)	207,298	181,639	186,159	190,872	194,196	960,164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사업비(제4조 제1항)	421,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281,000
	소계(b)	628,298	396,639	401,159	405,872	409,196	2,241,164
총비용(b-a)		628,298	396,639	401,159	405,872	409,196	2,241,164

나. 추계의 전제

- 1) 국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
-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출 계속 발생
- 3)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서 '직접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4) 인원은 한국교통연구원의 공항소음분석센터 6명을 고려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게 3명으로 산정
- 5) 인건비는 서울연구원의 정원 외 직원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 사업비는 물가상승률 미반영, 인건비와 운영비는 상승률은 최근 5년 물가상승률을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

구 분	평균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1.9%	4.0%	2.2%	1.3%	1.3%	0.7%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다. 상세 비용 추계의 결과

1)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운영비(조례안 제4조 제2항)

○ 총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 960,164\text{천원}$

○ 연간비용 = 인건비(운영비 포함) + 시설비 + 임차료

① 유지관리비

- 초빙선임연구위원 '가'급(센터장) : 4,422천원 × 1명 × 12월 = 53,064천원
- 초빙연구위원(가급) : 3,786천원 × 1명 × 12월 = 45,432천원
- 초빙부연구위원(가급) : 3,420천원 × 1명 × 12월 = 41,040천원
- 보조원(상시) : 53,810원 × 150일 = 10,762천원
- ※ 보조원은 소음측정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반영
- 경비 : 12,000천원(전화료, 인터넷사용료, 기타 운영비 등)

② 시설비 : 20,000천원

-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복사기 1대, 책상 4개 및 가구 파티션 등

③ 임차료(20평 / 매년 10% 증가) : 22백만원

- 1개소당 임차료: 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 × 연 인상률(10%)
- 1개소 보증금 10백만원
- 1개소당 임차료 12백만원(1백만원×12월)
- 연 인상률 10% 적용
- ※ 보증금은 첫해만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계	207,298	181,639	186,159	190,872	194,196	960,164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165,298	168,439	171,639	174,900	178,223	858,499
센터 보증금	10,000	-	-	-	-	10,000
센터 임차료	12,000	13,200	14,520	15,972	15,973	71,665
센터 시설비	20,000	-	-	-	-	20,000

주 : 인건비와 운영비는 최근 5년간 물가 상승률을 산술평균한 비율(1.9%) 적용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센터 지원관련 사업설명서 참고

2)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사업비 (조례안 제4조 제1항)

○ 총비용 = $\sum_{i=1}^5$ (연간비용)_i = 1,281,000천원

○ 연간비용 = 홈페이지 구축관리 등 3건(300,000천원)

① 홈페이지 구축 관리 : 1억원

※ 첫째는 구축비 및 운영비를 반영, 2차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를(구축비 및 운영비의 15%) 반영

* 13년 한양도성 홈페이지 구축용역 입찰공고 참고하여 추계

② 항공기 소음 피해 백서 : 1억원

- 국문·영문백서 제작비용(번역·감수료, DM발송 등) : 65백만원

- 원고료 및 위원회 운영비 등(집필진 원고료 및 감수료 등 기타 경비) : 35백만원

* 2014년 한국인터넷 백서 발간용역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추계

③ 항공기 소음 위험성·피해·방지 관련 홍보물 및 영상물 제작 : 1억원

④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121백만원

-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매 4대 + 소프트웨어 구매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홈페이지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	100,000	15,000	15,000	15,000	15,000	160,000
항공기 소음 피해 백서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항공기 소음 관련 영상물 제작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환경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121,000	-	-	-	-	121,000
계	421,000	215,000	215,000	215,000	215,000	1,281,000

주 :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중 관리비는 15년 SW대가 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기준(15%)

자료 :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센터 지원관련 사업설명서 참고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남 승 우
 정책조사팀장 여 차 민
 예산분석관 임 준 혁

☎02-3705-1281, e-mail(limjh9438@seoul.go.kr)